2022 지역SW서비스사업화 사업설명회









- (공고명) 2022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역지원, 제주, 세종) 통합공고 (내내역 사업명: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지역선도기업사업화 지원, 지역현안해결형SW개발)
- (공고기간) 2D22년 1월 27일(목)~3월 14일(월) (47일간)
- (총 지원규모) (지역지원) 114.08억원 (제주) 3.24억원, (세종) 3.24억원

사업명	구분	제안 가능 과제수	국비	국비+지방비 (지원기간)
TIMENA/LILLIA LICH÷I	지역지원	광역당 3개	연간 1.92억원 이내	B억이내/2년
지역5W서비스 사업화 (E3 E2어)	제주	3 개	연간 1.62억원 이내	7억이내/2년
(52.569)	세종	3개	연간 1.62억원 이내	7억이내/2년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48억)	지역지원	광역당 3개	연간 1,92억원 이내	4억이내/1년
지역현안해결형SW개발 (20억)	지역지원	컨소시엄별 1개 분야	(초광역) 7억이내 (단일 광역) 3억이내	6~14억/1년

〈지원규모〉

- ※ 1개의 광역시도 내 복수의 진흥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기관별 협의를 통해 광역당 3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광역당 3개를 초과하여 지원시 광역시도내 내내역사업의 지원 과제 신청이 모두 무효처리 (단 지역현안해결형의 경우 제한 없음)



지원 조건 및 대상

● 지원조건

(지방비) '21년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대비 매칭비율 상이

재정자립도	지역(자립도,%)	매칭비율
20초과~35%미만	전남(22.2), 전북(23.1), 강원(24.5), 경북(24.9)충북(28.3), 충남(32.3), 제주(32.7), 경남(33.5)	국비:지방비=60:40
35초과 ~ 50% 이하	대전(39.9), 광주(40.8), 대구(44.6),부산(46.1), 울산(49.6)	국비:지방비=55:45
50%초과	인천(50.3), 경기(57.3), 세종(58.8)	국비: 지방비=50:50

^{* &#}x27;21년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세입 개편 후 지방재정자립도 적용('21,4월)

- (민간부담금*) 하위수행기관으로 기업 지원시, <u>의무비율 2□%준수</u>
 - * 코로나19 연구개발지침에 근거하여 민간 부담금 비율 조정/적용
 - * 총 지원사업비 중 <u>민간의무매칭은 20%(현금, 현물 포함), 현금은 10% 이상</u>
- (지원대상)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과기정통부 공고 2021-0925호참고3 참조)
 및 SW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컨소시엄 구성

^{*} 지방비 매칭 재원(도비/시비)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자립도 적용가능



접수 방법 및 향후 일정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내 <u>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u>이용
- (신청접수 마감 기한) 2022년 3월 14일(월) 15시까지
 - *마감기한 경과 시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최소 1일전 완료 요망(기간연장 불가)
 -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구분	일정	세부내용
사업 공고	'22.1.27(목) ~ '22.3.14(월)	사업공고 (NIPA)(47 일간)
서류평가	'22 .3. 15(화)~16(수)	사업공모 준비 사항 안내(NIPA)
발표 평가(예정)	(서비스, 선도) 3월 18일(금)~22일(화) 3일간	선정 평가(서비스, 선도)를 위한 발표자료 회신
글표 6/1(에6/	(지역현안) 3월 23일(수)~24일(목) 2일간	(3월 17일(목) 11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회신)
사업 심의 위원회	3월 5주차	최종 과제 선정 및 사업비 규모 심의
		이의신청 기간:10일간
예비 선정 결과 알림 및 이의신청 접수	3월 5주차	서비스사업화는 1차년도 수행계획서 제출
		(예비선정 결과 통보후 3일이내)
사업비 검토 및 사업계획서 보완	3월 5주차 ~ 4월 2주차(~4월 8일)	사업비 검토, 사업계획 보완지도(NIPA)
최종확정 및 협약 추진	4월 3주차(11일~15일)	







사업내용

● (사업목적) 강소등W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SW서비스사업화지원을 통해 지역SW기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사업 내용)

과제기획 단계부터 서비스개발 단계, 테스트 현장적용 단계, SW품질검증 단계, 서비스 고도화 단계, 사업화 수출 단계까지 SW서비스사업화를 위해 단계별로 맞춤 지원



신청자격

• <u>수도권을 제외한 주관</u>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 사업수행기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18개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과기정통부고시2021-0925호참고3참조)

참여 **사업수행기관***: GW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가능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지원가능 범위〉



〈참여 사업수행기관* 지원요건 〉

- · **시업자등록증에업종/업태가"소프트웨어지문,개발및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u>당사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업자(국</u>세청 및통계청 분류코드참조)
- · 중소기업기본법제단조에하당하는대기업및중간기업법제단조에하당단는중간기업지원불가
-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 괴제주관·참여시업수행기관의50%이상은해당자역기업참여

(기업수 및시업비비중모두충족필요,에시:해당지역/시업비비율=해당지역주관·참여기 관/전체주관·참여기관)

- **(지역별 심의)** NIPA제안전,지역**자체 과제 심의위원회**를반드시개최
- (중복성검토)

지역별 특호산업분야*지원제외(중복분야지원시서류,선정평가시지원제외)

- * 경남(지식친화형 기계설비), 울산(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충남(융복합 디스플레이), 강원(관광테크), 충북(지능형반도체)
- * 부산(스마트 물류), 인천(바이오정보서비스), 경북(모빌리티), 전북(스마트팜)

<u>14년부터</u> 타지역수행과저민스트(참고))참고하여유사중복과제지원제외

NTG등과제중복검토결과증빙제출

• (사업비 편성)

주관기관의 사업비(국비+지방비의 20%내외)는 과제기획을 위한 평가비, 인건비등에 대하여 1월부터 제한적인 비용인정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는 협약월 4월부터 종료시까지 편성가능

- (하드웨어 투자) SW서비스개발 이외 하드웨어 개발은 불가
 - * 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사업비(현금)의 20% 이내 산정가능)



참여율 등 인력배치

- (PM*) 내역사업내에서 지역별「지역SW서비스사업화」과제 PM 참여율 30%이상 필수
 - (PM 1인이 다수의 서비스사업화(내역) 과제 수행 가능)
 - *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서장 급 추진 필요
 - * 예시:1개지역에서지역5W서비스사업화지원과제1개,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1개,현안 해결형5W개발1개동일PM과제수행시과제당각각10%신정하여총30%참여율로참여기능
- (전담인력) 내내역사업별 전담 1□□% 투입인력 1인 이상
 - *에시:전담인력의 경우 내내역사업별로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정 필수, 지역현안해결형SW 개발 1인,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1인 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 유의사항

- (목표설정) 일자리칭출 계획 작성 필수, 순고용인원* 지표적용(공통목표제시) * 국비+지방비 1억당 1.3명이상 신규고용,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페이지수) 5□페이지 이내
- (산출물) 수행계획서 상에 연차별, 과제별 서비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의

과제관리, 지원

- (사업화지원) 과제 초기단계부터 테스트, 컨설팅, 마케팅
 의무추진
- (품질관리) SW품질관리 및 테스트, 컨설팅 전문기업 선정 및 품질 수준 진단을 위한 SP위원(Software process) 자문 의무추진 (사업비 규모 자율)
 - * 과제수행시 SW품질역량센터 SW Tool 이용 요청(참고2 자료 참고)
- (MP선정) 전략산업전문가 또는 SW과제관리 전문가 1인 선정

추가 의무 제출자료

- (수요처 적용) 과제수행 결과물의 지자체 또는 수요처 적용 도입의사 확약서 제출
- (기업PR자료) 선정평가를 위한 기업의 기술능력, 전문성을 확인할수 있는 1분 내외 동영상 제출(자유형식)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양식 제공	비고
공통	① 사업수행계획서(공문 포함)	0	
	② 주관·참여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양식제공) 각1부	0	
	③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 발급본
	④ 지방자치단체 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양식 제공) 각 1부	0	
	⑤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양식 제공) 1부	0	
	⑥ 수요기관(지자체등)의 도입 의사 확약서 l부	0	
	⑦ 지역자체 사업심의위원회 결과 1부		자체 양식
	®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1부		NTIS 결과 다운로드
			마 캡처본
	⑨ 기업 동영상 파일 l부		자체 양식
	⑩ 사업자등록증 각1부		국세청 발급본
	⑪ 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제공) 각1부	0	



▶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평가기준

	항 목	평가 지표		세부 지표	배 점	
			목적 부합성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	- 신규서비스 기획 적절성 성 -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과제 성과 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 (40점)	사업 수행 능력	✓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 지역SW산업기관(주관)의 과제 관리·지원 역량 – 참여 사업수행기관 역할의 적절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전문성	40	
		지원체계	✓ 지원체계의 타당성	추진전략, 추진체계 적정성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기술성(15점)	기술성	✓ 제안 기업 및 과제의 기술 우수성	- 대체 가능성,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15	
O _n	상용화 가능성(30점)	상용화 가능성(30점)	사업성	✓ 과제 수행기간내 SW서비스사업화 가능성	- 가격 경쟁력, 시장 진출 계획,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30
O		성과 파급력	✓ 과제 종료 후 응용·지역경제 파급효과	- 현장적용, 타지역 확산 가능성, 매출성장, 시장진입 등	00	
***	사업관리(10점)	성과 제고 계획	✓ 일정, 산출물, 사업비, 품질관리 등 관리 적정성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SW품질관리계획 및 추진방안의 적정성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안 	10	
	일자리 창출 (5점)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도	고용의 질적개선 적절성 및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적정성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사회공헌도	5	
			총 점		100	



를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개발역량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내 예비선도등W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에 맞춘 자율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을 육성
 - * 예비당W선도기업: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성장단계별역량점수가 3점이상인기업
- (주요 사업 내용)

지역내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등 **기업수요에 맞춘** 지율형 맞춤 지원으로 단기간에 성과 창출 도모

(지원분야) 일자리창출형, 기술사업화형, 기업 성장형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점지원분야(일자리창출형, 기업성장형, 기술사업화형)를 선정하고, 이행과제를 사업비 범위 내 자율제안 공통성과지표외에 지원분야 관련성과측정이 가능한 세부성과지표제시 필요

공통성과대표는정부성과목표에따라변경 등

중전부()t/	지 지 의 기	T(JUL)
	パーロード・ア	

구분	22년 목표	비고(산출근거)
직접 신규 고용인원	명	지원비(국비+지방비)1억당1,3명
매출증가율	9%	22년 매출증가율 9% 이상
수혜기업 만족도	91.4점	91.4점
예산집행율	100%	100%

지원유형	중점분야세부성과지표
일자리창출형	청년고용10억당□명,신규채용정규직비율□0%이상달성시
기업성장형	직전3개년연평균증기율대비ロ0%이상달성하(아울마약원이상또는다건이상
기술사업화형	혁신기술을기반으로사업화00건,해외특허0건



신청 자격

- ●서울 제외한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 사업수행기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日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21개 지역별 GW산업진흥기관** (과기정통부공고 2021-0925호참고3참조)
 - 예비선도기업**(참여 사업수행기관) : 요건을 충족하는 SW사업자* (필요 시, 산·학·연 컨소시엄 가능)

☞ 자격요건: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SW사업자 지원요건〉

- · 시업수행기관중 선도에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이상인 5W기업
- · **시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타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해당하는대기업및중견기업법제2조에해당되는중견기업지원불가
-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 괴제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의 50%이상은해당지역기업참여(기업수 및 사업비비중)
- · 수도권 소재 선도기업의 경우 제안전 비수도권 수요처 현장적용, 기술고도화,테스트등 비수도권과신학협력등이기능하도록 연계방안제시필요

	연구개발 혁신 역량	5점	4점	3점	2점	점
	연구개발 투자 비율	10% 이상	5%이상 ~10%미만	3% 이상 ~5%미만	0%초과~ 3% 이하	없음
I	연구개발 인력 비율	30% 이상	20%이상 ~30%미만	10% 이상 ~20%미만	0%초과~ 10% 이하	없음
	특허	10개 이상	6개 ~10개 미만	2개~5개 미만	1711	없음
	성장단계	점	4점	图	超	점
	연평균 매출 증가율(3개년)	3D% 이상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0%초과~ 10%미만	없음(-성장)
	매출액 규모 (3개년 평균)	50억 이상	3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이상~30 억 미만	3억 초과~ 10억 미만	3억 미만
	고용규모(21년)	100명 이상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5인 초과~ 10인 이하	5인 미만

(지역SW 기업 연구개발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배점 및 구분)



선도기업 산출조건 정의 1

연구개발투자비율=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합계액/3개년 매출액**합계액

(18~20년 또는 19~21년 중 <u>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u>)

- *연구개발비:①재무상태표의무형자산의개발비증기액)+②손익계산서의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경상개발비 또는(경상) 연구개발비+③제조원가명세서 상의제조경비의 연구비,경상개발비 또는(경상)연구개발비+④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경상개발비 또는(경상)연구개발비
-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 (예시) 최근 3개년 이내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단, '20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0년과 '21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연구개발인력 비율:연도말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총종사자수**
 - * 연구개발인력 : 조직 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 등 제외
 - ** 총 종사자 수 : 2021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S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시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 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선도기업 산출조건 정의 2

● 매출 증가율: 최근 3개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18~20년 또는 '19~21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매출액 규모**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8~20년 또는 '19~21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특허: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 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¹18~2□년 또는 ¹19~2¹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재무상태표	무형자산의 개발비	당해연도 개발비 총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 상각비)	고정자산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등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연구비,경상개발비또는(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상동
제조원가명세서	제조 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기타 원가 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금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것 아님



- (지역별 심으) NIPA제안전,지역자체 과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
- (지원자격 확인) 예비선도기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역답W산업진흥기관 및 전문가(회계사)의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결과를 필수로 제출
 ※ 수행계획서 내 양식 '적정성 검토 확인서' 붙임 참조

(중복성검토)

지역별 특호산업분야"지원제외(중복분야지원시서류,선정평가시지원제외)

* 경남(지식친화형 기계설비), 울산(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충남(융복합 디스플레이), 강원(관광테크), 충북(지능형반도체), 부산(스마트 물류), 인천(바이오정보서비스), 경북(모빌리티), 전북(스마트팜)

<u>14년부터</u> 타지역수행과제리스트(참고1)참고하여유사중복과제지원제외

NTG 등 과제 중복검토결과 증빙 제출

• (참여사업 수행기관)

과제 참여 <u>기업</u>의 경우, <u>SW사업자만 가능</u>(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과제주관 참여사업수행기관의 <u>50%이상은해당지역기업참여(기업수 및 사업비</u>)

- (하드웨어 투자) SW서비스개발 이외 하드웨어 개발은 불가
 - * 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사업비(현금)의 20% 이내 산정가능)

참여율 등 인력배치

- (PM*) 내역사업내에서 지역별「지역5W서비스사업화」과제 PM 참여율 3□%이상 필수 (PM 1인이 다수의 서비스사업화(내역) 과제 수행 가능)
 - *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서장 급 추진 필요
 - *(예시) 개지역에서지역5W서비스시업회지원고제1개지역선도기업시업회지원1개,현안해결형5W개발1개동일PM고제수행시고제당각각10%산정하여총30%참여율로참여기능
- (전담인력) 내내역사업별 전담 1□□% 투입인력 1인 이상
 - * (예시) 전담인력의 경우 내내역사업별로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정 필수, 지역현안해결형GW 개발 1인,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1인 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 유의사항

- (목표설정) 일자리창출 계획 작성 필수, 순고용인원*지표적용(공통목표제시) * 국비+지방비 1억당 1.3명이상 신규고용,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페이지수) 5□페이지 이내
- (산출물) 수행계획서 상에 연차별, 과제별 서비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의

추가 의무 제출자료

- (수요처 적용) 과제수행 결과물의 지자체 또는 수요처 적용 도입의사 확약서 제출
- (기업PR자료) 선정평가를 위한 기업의 기술능력, 전문성을 확인할수 있는 1분 내외 동영상 제출(자유형식)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양식제공	비고
공통	①사업수행계획서(공문포함)	0	
	②주관·참여시업수행기관의참여의사확인서(양식제공)각 부	0	
	③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청발급본
	④지방자치단체부담현금납입확약서(양식제공)각1부	0	
	⑤과제신청자격요건사전자기점검표(양식제공) i부	0	
	⑥ 수요기관(지지체등)의도입의사확약서 I부	0	
	⑦지역자체사업심의위원회결과 1부		자체양식
	®NTIG 중복성체크결과 시본 I부		NTIS 결과 다운로드 or 캡처본
	⑨기업동영상파일 부		자체양식
	⑩사업자등록증각1부		국세청발급본
	⑪예비선도기업적정성검토확인서1부	0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제공) 각1부	0	
기업	①사업자등록증부		국세청발급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¹ 부		법원발급본
	③국세,지방세및 4대보험완납증명서각1부		국세청발급본
	④최근3년간매출및연구개발비관련서류 (18년도~20년또는 19년~건년표준재무제표각부)		표준재무제표양식
	⑤ 직전연도고용및연구개발관련서류 ('건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건월분및연구개발인력확인서류각']부)		연구개발인력확인이가능한자체문서
	© 초근3-간특하면면서류(18년도~20년1년) 전년국 H구와특하증각(F)		특허청등발급본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평가기준

	평가분류	평가함목		세부 평가 기준	비고
	사업계획서 (40점)	목적 부합성	✓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지원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수행능력 및 지원체계	✓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지역SW산업기관의 과제관리·지원역량, 참여수행기관역할의 적절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전문성	40
		목표관리	✓ 프로그램 목표관리의 도전성 및 적정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지표/중점지원목표/기타목표 등 설계의 구체성·난이도	
Q _o	기업 역량(20점)	기술경쟁력	✓ 서비스 개발 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경쟁력	<mark>3</mark> -기술 차별성 및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유사 중복성	20
		선도화 노력	✓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및 지원 기관의 노력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특허 등 연구개발역량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 매출증가, 고용증대 등 성장역량 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지원프로그램의 우수성(3D점)	성장 잠재력	✓ 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기업대내외 환경분석에 기반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예시 :☐W□T분석 등), 주요 고객/시장 분석의 타당성 - 기업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30
	77 8(308)	성과 파급력	✓ 기대성과의 파급효과 및 적정성	신규시장 창출, 수출 증대 등 지역5W기업경쟁력 증대 효과 - 과제 종료 이후 해당서비스를 통해 지역5W산업 및 타지역 확산효과	
③	사업 관리 (10점)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사업비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10
			총 점		100



물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자체 및 공공분야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여 **지역 주도의 산업혁신·현안해결 GW개발과제**를 개발-실증-적용하여 지역체감성과 창출 및 他지역 확산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지자체 또는 공공분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이의 지역 문제를 SW기술접목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해결하는 **지역 주도의 프로젝트 추진** 지자체의 현안발굴 및 해당 **지역내 수요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요처 확약** 등을 통해 **즉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과제 지원**

●지원내용

지자체/공공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SW서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 등 지원 (지원분야) 산업혁신, 정주개선, 갈등해결 중 1개 분야를 선택, 문제해결 및 현장적용 위한 복수 과제 제안 가능

●지원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단년도)

신청자격

- 서울 제외한 지역별 GW산업진흥기관 및 참여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초광역 제안 가능)
 - * SW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 현안 정의와 해결 가능한 SW솔루션 제안 및 추진 계획이 명확한 지역
- 주관 사업수행기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21개 지역별 5W산업진흥기관*
 (과기정통부공고 2021-0925호참고3참조)
- 참여 사업수행기관 : SW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등

〈참여 사업수행기관* 지원요건〉

- · **시업자등록증에업종/업태가"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등으로명시되어있는등 GW관련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시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참조)
- ㆍ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중복성검토)

하당지역별유사지역문제해결형 RND 수행고제분야지원제인(중복분야지원시서류,선정평가시 지원제인)NTTG등고제중복검토결과증빙제출 (예사))대전(시민생활인전), 경북(지진·재난인전), 전북(대기환경개선대중교통활성화), 충북(도시인전배출가스·환경오염물질), 부산(해양분야시회문제), 경남(사회인전사고), 전남(사회적 격차), 인천(아동삶의질)

- (산출물) 수행계획서상구현기능한서비스모델을구체적으로제시
- (PM*) 내역사업 내 지역별「지역GW서비스사업화」과제 PM 참여율 30%이상 필수(PM 1인이 다수의 서비스사업화(내역) 과제 수행 가능)
 - *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서장 급 추진 필요
 - *(에시)1개지역에서지역5W서비스시업화지원과제1개,지역선도기업시업화지원1개,현안해결형5W개발1개동일PM과제수행시과제당각각10%산정하여총30%참여율로참여기능
- (전담인력) 내내역사업별 전담 1□□% 투입인력 1인 이상
 - *(예시) 전담인력의 경우 내내역사업별로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정 필수, 지역현안해결형SW개발 1인,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1인 배정 등
- (사업계획서) 5□페이지이내로작성
- (적용) 과제수행결과물의지자체또는수요처적용도입의사획약서제출
- (하드웨어 투자) SW서비스개발 이외 하드웨어 개발은 불가
 - * 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사업비(현금)의 20% 이내 산정가능)



(사업목표)

구분	비율	성과지표	단위	최소 산정기준(안)	지표해설	측정방법 및 산식
	20%	직접고용	西0	국비+지방비 10억당 13명	본 사업으로 발생한 관련분야 (ICT, SW, SW융합 등) 신규고용	본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의 직접 고용인원의합 * 해당 사업기간 내 신규 채용인력의 4대 보험 가입 증빙(기간내 퇴사자는 불인정) * 전년도신규고용인력공고일기준(카월이전까지)이 당해연도에도 고용 유지될 경우 인정 가능
공 통 지	10%	수요기업 만족도	점	91.4	본 사업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결과수치	본 사업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한 종합만족도점수 * 종합만족도(CSI) = [차원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50)	10%	사업화 (매출액)	%	자율 제안	SW서비스 개발물의 현장적용(사업화) 매출액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을 현장적용(사업화) 하여 발생한 매출액(백만원) * 사업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0%	SW등록	건	자율 제안	본 사업에서 개발한 SW서비스 결과물의 저작 등록 현황	본 사업 수혜기업의 SW기술, 제품 등록 건수 * 해당시업기간내(W)등록증및등록확정관련문사로증방기능
자		언론홍보 (선택)	건		본 사업의 성과 관련 언론홍보건수	본사업과관련된내용으로언론매체(신문,방송등)를 통해 결과물 및 성과를 홍보한 건수 * 유사내용은최초1회만인정하며,단순과제선정결과 등 성과 홍보내용 미확인시 불인정
율 지 표		전시회 참가 (선택)	건		본사업결과물의사업회를 위한 마케팅 활동(전시회 참가)건수	본 사업의 결과물(SW서비스)의 대외홍보 및 사업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건수 * 온/오프라인부스또는 전시관형태로참가한경우만 인정
(50)		자율지표 1			자율적으로 제안/산정	측정방법 및 산식을 명확하게 제시
		자율지표 2			자율적으로 제안/산정	측정방법 및 산식을 명확하게 제시

- *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 사업 공통 성과지표 해설 및 측정방법(안)

 * 색 지표는 성과지표명을 포함한 비율, 측정 방법 및 산식은 임의 수정 불가

 * 작업고용, 수요기업 만족도, 사업화(매출액) 지표 목표는 최소 산정기준(안) 이상 제시
- * 자율지표(선택)의 경우, 성과지표명과 비율은 수정 가능, 측정 방법 및 산식은 임의 수정 불가
- * 공통지표(3개)+자율지표(@개) = 최소 8개 이상, 최대 12개 이내로 설정 가능
- * 자율지표별 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제출서류	양식제공	비고
① 사업수행계획서(공문포함)	0	
②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0	
③ 지방자치단체 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각 1부	0	
④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1부	0	
⑤ 수요처의 도입 의사 확약서 1부	0	
⑤ 개인정보활 용동 의서 각 1부	0	
⑦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1부		NTIS 결과 다운로드 or 캡처본
®사업자등록증 각 I부		국세청발급본
⑨ 발표자료 1부		자체양식



▶ 지역현안해결형SW 개발 평가기준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및 방향의 부합성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현안분야 및 분석결과의 이해도 - 제시한 현안 및 분석 결과의 해결방안 및 방향의 적정성 - 타 지역, 타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3□점) ▼ SW서비스 개발의 구체성 및 해결 가능성 - 정의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SW서비스 개발내용의 구체성 및 해결가능성 - 개발규모, 수행기간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	및 방향의 부합성 야 및 분석결과의 이해도 해결방안 및 방향의 적정성 해결 가능성 한 SW서비스 개발내용의 구체성 및 해결가능성	목적 부합성	항 목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현안분야 및 분석결과의 이해도 - 제시한 현안 및 분석 결과의 해결방안 및 방향의 적정성 - 타 지역, 타 사업과의 차별성 - 자업계획의 구체성 및 - 다체성 및 - 전의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SW서비스 개발내용의 구체성 및 해결가능성 - 개발규모, 수행기간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	야 및 분석결과의 이해도 해결방안 및 방향의 적정성 해결 가능성 한 SW서비스 개발내용의 구체성 및 해결가능성	목적 부합성		
문 당성 (3□점) - 정의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SW서비스 개발내용의 구체성 및 해결가능성 - 개발규모, 수행기간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	ł SW서비스 개발내용의 구체성 및 해결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변경의 역경경 급			
 ✓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의 과제수행 역량 및 타당성 – 컨소시엄의 과제관리, 지원역량, 수행기관별 역할의 적절성 –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 지자체와 정책제도적 협력방안 및 지원계획 		지원체계		
현장적용/ 사업화가능성 * 현장적용/사업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및 기술경쟁력 - 현장적용/사업화 대상 수요처의 적정성, 현실성 및 매출발생 가능성 - 개발물의 기술수준 및 차별성/경쟁력	H의 적정성, 현실성 및 매출발생 가능성			þ
사업성 및 파급효과(30점) ✓ 성과창출계획 및 확산 가능성 성과창출 및 파급효과 → 사업의 수행성과 창출 및 확산계획의 적정성 - 지원기간 이후 수행성과의 활용방안 및 확산 계획 - 과제성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일자리 및 신서비스 창출 등)	· ·계획의 적정성 용방안 및 확산 계획	성과창출 및	사업성 및 파급효과(30점)	
사회적 가치(3D점) ✓ 지역현안의 시급성 및 공공성 – 지역현안 해결의 시급성, 지역현안 해결 서비스의 공공성 및 개선 가능성		공공성		***
지역사회 기여도 및 활성화 - 현안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서비스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시되극 기자(30급)	P
사업관리(1□점)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관리 적절성 -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관리 분야 -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 성과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관리 적정성	사업관리(10점)	
·	100			
가 점 초광역 타지역 확산가능한 초광역 과제 제안	테안 5	초광역	가점	





자주 묻는 질문(FAQ)

? Question

- 1. 지역별 수행중인지역전략산업분야 또는 유사지역문제 해결형 RSD 수행과제분야는 지원이제외되나요?
- 2 컨소시엄구성시두개이상의지역5W진흥기관이 한괴제에참여가능한가요?(지역현안제외)
- 크 해당지역 및사업비50%기준은?
- 4. 수행기관별 시업수행기간은?

! Answer

- (선도,서비스)융합클러스터 2□수행지역의 경우해당지역전략산업 분야 관련 서비스 개발은 중복성 검토(서면,발표)에서 지원제외.
 (지역현안해결형) 지역별 5□5랩 수행분야 5W개발지원은 지원제외
- 2진흥기관 I곳이주관, 나머지는참여로 하여구성가능, 단 진흥기관 역할을수행하는것이므로시엄비는 국내+지방비의 20% 내외 편성
- 크기업수 및시업비 비중모두충족필요,예시: 해당지역/시업비비율= 해당지역주관+참여기관/전체주관+참여기관)
- 4. 주관기관의 경우평가기획에 포함된 인건비, 평가, 기획비에 대해 월 부터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통상적인 시업비편성은 4월부터 산정 가능



감사합니다!



